

2022 서브노트(객세 및 세무회계 목차) 정오표 - 5. 2. 현재

1.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2022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세액공제 개정사항(난임시술비 30% 공제율 적용 및 미숙아 등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규정에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지만,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회의 입법과정을 고려해보면 회계사 2차시험일인 2022년 6월 2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입법과정의 오류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일 현재의 세법규정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2-125	하4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의료비 세액공제} = a + b$ $a. \text{공제대상 난임시술비} \times 20\%$ $b. a \text{ 제외 공제대상 의료비} \times 15\%$ </div>

2.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2022년 3월 초에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개정사항을 교재에 반영합니다.(2쇄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계사 2차 시험일인 2022년 6월 2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되면 다시 추가공지를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2022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2021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Page	행	수 정 전(1쇄)	수 정 후
2-103	상4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1. 공제대상액 : (① 또는 ② 또는 ③) + ④ 개정
	상19	<추가>	④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 ⁷⁾ × 10% +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 ⁸⁾ × 10% 개정
	하10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 ×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이용분 × 40%, 100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100만원]	(2) 추가한도 : Min[전통시장사용분 ×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이용분 × 40%, 100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100만원] + Min[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 × 10% +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 × 10%, 100만원] 개정
2-104	상9	<추가>	7.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5%) 2022년 총액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추가>	8.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 =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 (2021년 전통시장사용분 × 105%) 2022년 전통시장사용분 초과사용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7.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것으로 본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	--

(2) 월세세액공제

2022년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0%'에서 '12%'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Page	행	수 정 전(1쇄)	수 정 후
2-132	하9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0%(또는 12%*)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12%(또는 15%*) 개정 개정 2022년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3. 기타 수정사항

Page	행	수 정 전	수 정 후
1-224	하6	㉠ 유형자산(건축물 제외)	㉠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제외)
	상4	양도 : ㉢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	양도 : ㉢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
2-178	상8	~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시설물이용권을 ~	~ 증여받은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을 ~
	하2	㉢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	㉢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
2-180	하6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시설물이용권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시설물이용권
3-109	하1	~ Min[①발급건수×200원, ②100만원]	~ Min[①발급건수×200원, ②연간 100만원]
3-133	상9	× 79%	× 76.3%